

정정대비표

1. 대상투자신탁: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(H)

2. 주요정정내용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
1) 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(집합투자규약에만 해당)

2)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설명서 업데이트

3)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효력발생일: 2020.10.23

4. 변경 내용:

가. 집합투자규약

변경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사항 반영	<p>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<p>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	<p>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<p>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<p>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

		<p>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p> <p>5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 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p> <p>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p>	<p>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p> <p>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집합투자업자 보수율</p> <p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.</p> <p>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</p> <p>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신탁업자 보수율</p> <p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</p> <p>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판단 및 결정 하에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</p> <p>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부칙		((신규))	<p>제1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일에 체결되었으나,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(일괄 신고서)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</p>

나. 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------	------	-----	-----
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의 금융정보 관련 유의사항 조항 추가	((추가))	10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(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거주지국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투자위험등급	위험등급 변경	4 등급 보통 위험	3 등급 다소 높은 위험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운용현황 및 수익률 업데이트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위험등급 변경	4 등급 보통 위험 연환산 표준편차: 6.32%	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연환산 표준편차: 12.24%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	기준일 변경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기준일 변경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

다.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투자위험등급	위험등급 변경	4 등급 보통 위험	3 등급 다소 높은 위험
투자비용	기준일 변경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
투자실적 추이	기준일 변경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
운용전문인력	운용현황 및 수익률 업데이트	((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))	((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))